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560호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일
산업통상부장관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예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
- 수입금 및 수익금 관련 규정 명확화

2. 주요내용

- ① (상위규정과 통일) 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 규정과 내용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강화 (제3조제1항, 제10조)
- ② (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강화) 안전관리형 과제*에 대한 과제 평가시 안전전문가 포함 및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근거 마련 (제7조제2항, 제43조제1항)
* 위험 물질 취급 등 재해위험이 높아 연구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특별 점검·관리가 필요한 과제
- ③ (평가결과 통보 기한 설정)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(제30조제1항)
- ④ (협약체결 기간 개선) 별도 외부검토절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기간을 추가하는 근거 마련(제36조제1항)

- ⑤ (평가 등급제 폐지) 등급 부여를 폐지하고 연구수행 의무 위반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‘완료/미완료’ 2단계로 구분
- ⑥ (수입금 및 수익금 관련 규정 명확화) 수입금과 수익금 관리를 분리하고, 관리 방안과 수익금 활용을 위한 절차 명확화(제48조, 제49조)
- ⑦ (기타 오기,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) 부처명, 규정 내 용어 통일,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(세종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iii032740@korea.kr
- 2)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
- 3) 팩스 : 044-203-474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(전화 : 044-203-451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행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범위 등)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(이하 “장관”)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. 1. ~ 6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7. “ <u>중앙장비심의위원회</u> ”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산업기술개발장비(이하 “장비”라 한다)의 도입, 유희·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8. ~ 6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용어의 정의) ①----- ----- 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 <u>중앙장비심의위원회</u> ”란(이하 “ <u>중앙장위</u> ”이라 한다) 장비통합관리에 ----- ----- ----- -----. 8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업별 심의위원회) ①(생략) ②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(실·국장급),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담당관, 전문기관 담당부서장,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(이하	제4조(사업별 심의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<u>산</u> ----- <u>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“평가위원 후보단”이라 한다)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 ③간사는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. ④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.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획위원회) ①(생략) ②기획위원회는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·학·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	제6조(기획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) ①(생략)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다 1. 공통운영요령 ‘별표1’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,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가. ~ 마 (생략) 바. (신설) 2. ~ 8 (생략) ③ (생략)	제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. 1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마 (현행과 같음) 바. <u>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안전전문가 1명 이상</u> 2. ~ 8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장비심의위원회) ①(생략)	제10조(<u>자체</u> 장비심의위원회) ① (현

현행	개정안
②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. 유휴·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. (신설) 4. (신설) 3.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	행과 같음) ②----- -----. 1.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. 저활용·유휴 장비의 판정 3. 불용장비의 결정, 재배치 및 처분 4. 시작품·시제품에 대한 처분 5. (호번호 변경, 현행과 같음).
③(생략) 제11조(운영위원회) ①(생략) ②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전문기관 담당부서장,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,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(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/2 이상) 하되,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③ (현행과 같음). 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산업통상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9조(지원대상 분야 발굴) ①~③ (생략) ④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. ⑤(생략)	제19조(지원대상 분야 발굴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산업통상부 ----- -----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
제30(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)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된 평가 결과(평가위원 명단,	제30조(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) ①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종합평가의견(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)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선정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(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외국과 공동펀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적용)에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략) 제36조(협약의 체결)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.	제36조(협약의 체결) ①----- ----- ----- 30일 이내(별도 외부검토 절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최종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,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60일 이내)에 -----.
② ~ ⑧ (생략) 제38조(협약체결의 중지) ① ~ ② (생략)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“지원제외” 또는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으로 처리한다.	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38조(협약체결의 중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또는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으로 -----.
제39조(협약의 해약) ① (생략)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“중단(성실, 불성	제39조(협약의 해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“중단(성실)”

현행	개정안
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(종합평점 85점 이상) 2. 완료 :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,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(종합평점 60점 이상 85점 미만) 3. <삭 제> 4. 불성실수행 :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,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의무사항(최종보고서 미제출 등)·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(종합평점 60점 미만)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, 제재대상 등을 구분토록 하고 “불성실수행”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·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⑨~⑬(생략)	합평점 60점 이상) 2. <삭 제> 3. (현행과 같음) 4. 미완료 : (현행과 같음) ⑧----- -- “미완료”으로 ----- ----- -----“미완료”----- ----- -----.
제48조(수익금의 관리)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시설·장비의 활용, 공간의 임대, 교육,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. 이 경우 장	제48조(수입금 및 수익금의 관리) ①----- ----- -----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이하 삭

현행	개정안
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(신설) ③(신설) ④(신설) ②(생략)	제>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(수입금 관리 통장 및 계정과 통합하여 활용 가능)으로 관리한다. 수입금 통장과 이 경우의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⑤ (현행과 같음, 번호만 변경)
제49조(수익금의 사용 등) ①~②(생략)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(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)을 거친 후,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,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.	제49조(수익금의 사용 등)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이사회 의결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다만,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이 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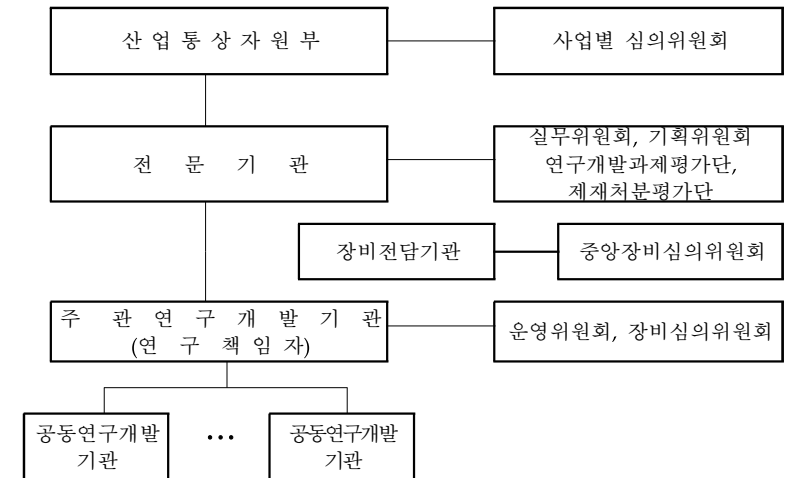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안
	가능한 경우에는 수익금 활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,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.	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45조 -----.
제50조(기술료징수 등) ①기술료징수 과제 중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(우수, 완료), 최종평가에서 우수,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.	제50조(기술료징수 등) ①----- ----- 단계평가·최종평가에서 완료----- -----.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(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)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“중단”, 최종평가 시 “불성실수행” 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(이하 “성과활용보고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	제52조(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) ①----- 단계평가·최종평가 시 “미완료”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다. 이때,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.		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~③ (생략)		②~③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57조(장비의 도입, 관리 및 처분)		제57조(장비의 도입, 관리 및 처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~② (생략)		①~②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>		<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연구개발 기간</th><th>성과활용 기간</th><th>성과활용기간 이후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권 리 주 체</td><td>취득권</td><td rowspan="3">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</td><td rowspan="4"></td><td rowspan="4">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</td></tr><tr><td>사용권</td></tr><tr><td>수익권</td></tr><tr><td>관리권</td></tr><tr><td>처분권</td><td>산업통상자원부</td></tr></table>		구 분		연구개발 기간	성과활용 기간	성과활용기간 이후	권 리 주 체	취득권	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		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	사용권	수익권	관리권	처분권	산업통상자원부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연구개발 기간</th><th>성과활용 기간</th><th>성과활용기간 이후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권 리 주 체</td><td>취득권</td><td rowspan="3">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</td><td rowspan="4"></td><td rowspan="4">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</td></tr><tr><td>사용권</td></tr><tr><td>수익권</td></tr><tr><td>관리권</td></tr><tr><td>처분권</td><td>산업통상부</td></tr></table>			구 분		연구개발 기간	성과활용 기간	성과활용기간 이후	권 리 주 체	취득권	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		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	사용권	수익권	관리권	처분권	산업통상부
구 분		연구개발 기간	성과활용 기간	성과활용기간 이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권 리 주 체	취득권	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		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익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관리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처분권	산업통상자원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	연구개발 기간	성과활용 기간	성과활용기간 이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권 리 주 체	취득권	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		주관연구개발 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익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관리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처분권	산업통상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60조(사업의 홍보)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, 특히, 국내·외 논문 발표 시 부처명(산업통상자원부) 및 과제명(과제번호 등)을 기재하여야 한다.		제60조(사업의 홍보) ----- ----- ----- 산업통 상부 ----- ----- ----- (산업통상부)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6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	제6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 추진체계(제17조 관련)		[별표 1]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“산업통상자원부”라는 단어 일체	“산업통상부”로 변경
“장비심의위원회”라는 단어	“자체장비심의위원회”로 변경
[별표 2] 추진절차(제18조 관련)	[별표 2] (현행과 같음)
“산업통상자원부”라는 단어 일체	“산업통상부”로 변경
[별표 3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	[별표 3] (현행과 같음)
“산업통상자원부”라는 단어 일체	“산업통상부”로 변경
“정산금”이라는 단어	“회수금”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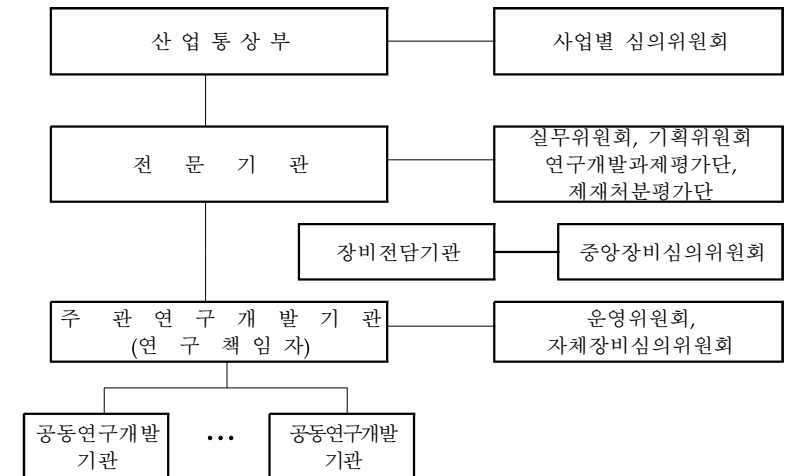
[별표 1] 추진체계(제17조 관련)

(변경 전)



[별표 1] 추진체계(제17조 관련)

(변경 후)



[별표 2] 추진절차(제18조 관련)

(변경 전)

① 정책지정의 경우

연구개발과제 · 연구개발기관 지정	산업통상자원부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전문기관
선정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평가결과 확정	전문기관(결과보고) → 산업통상자원부 [사업별 심의위] (결과확정) → 전문기관 (결과통보) →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
신규과제 협약 체결	전문기관 ↔ 연구개발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단계 평가 ¹⁾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 ²⁾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최종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② 지정공모의 경우

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	산업통상자원부
수요조사 및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	전문기관 [평가단], 산업통상자원부 [사업별 심의위원회]
과제기획 수행	전문기관 [기획위원회]
기획과제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	산업통상자원부 [사업별 심의위원회]
사업 시행계획 공고	산업통상자원부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전담기관
선정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평가결과 확정	전문기관(결과보고) → 산업통상자원부 [사업별 심의위] (결과확정) → 전문기관 (결과통보) →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
신규과제 협약 체결	전문기관 ↔ 연구개발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단계 평가 ¹⁾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 ²⁾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최종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③ 지정공모(사후기획형)의 경우
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④ 자유공모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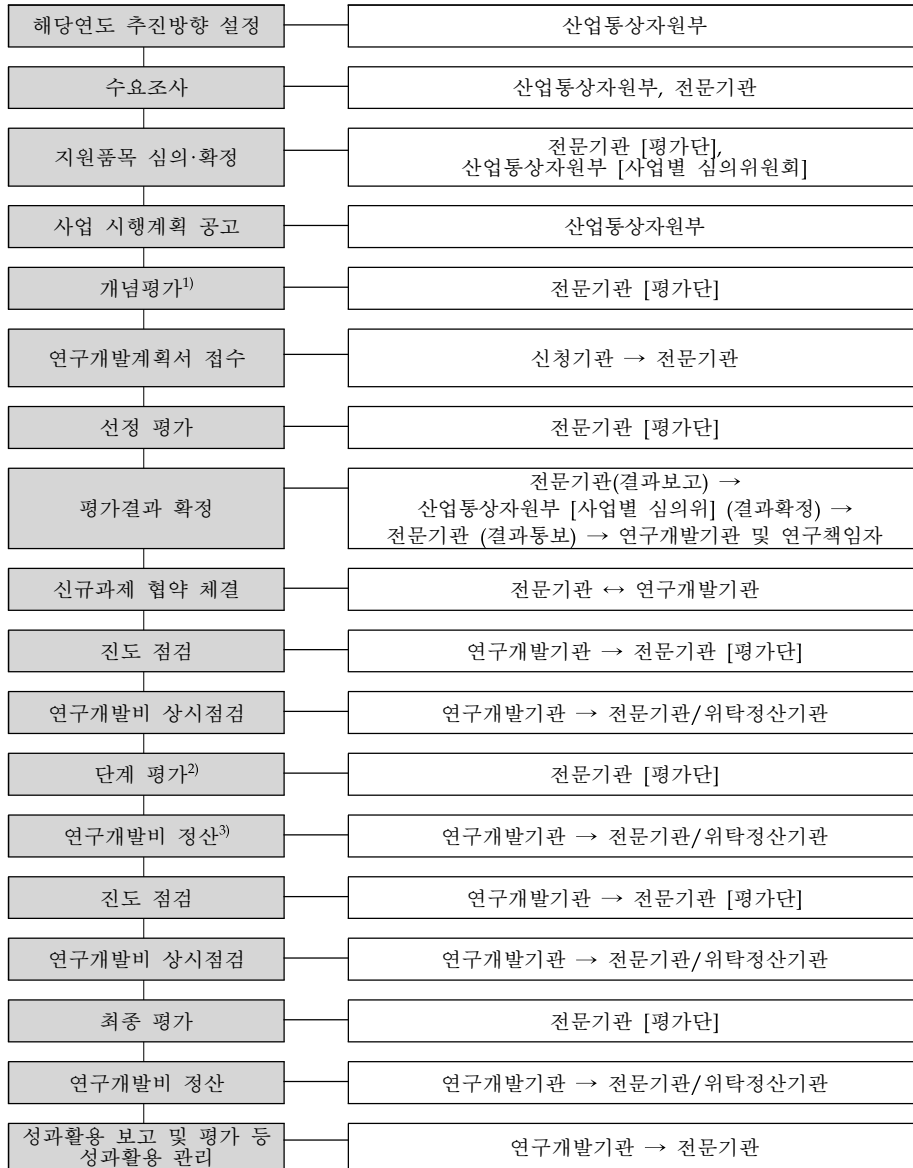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
1) 개념평가 실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2), 3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⑤ 품목지정의 경우
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
1) 개념평가 실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2), 3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[별표 2] 추진절차(제18조 관련)

(변경 후)

① 정책지정의 경우
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② 지정공모의 경우

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	산업통상부
수요조사 및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	전문기관 [평가단], 산업통상부 [사업별 심의위원회]
과제기획 수행	전문기관 [기획위원회]
기획과제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	산업통상부 [사업별 심의위원회]
사업 시행계획 공고	산업통상부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전담기관
선정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평가결과 확정	전문기관(결과보고) → 산업통상부 [사업별 심의위] (결과확정) → 전문기관 (결과통보) →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
신규과제 협약 체결	전문기관 ↔ 연구개발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단계 평가 ¹⁾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 ²⁾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최종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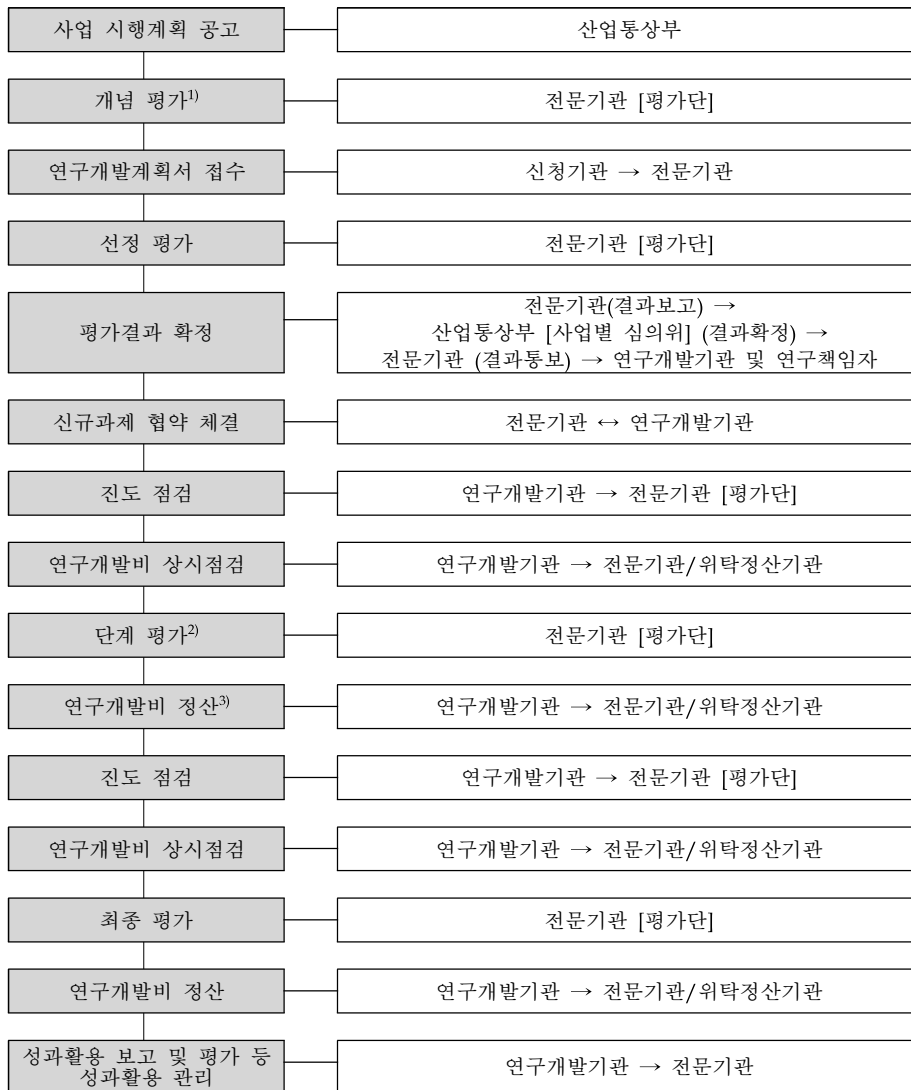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③ 지정공모(사후기획형)의 경우

사업 시행계획 수립	산업통상부
과제기획 수행	전문기관 [기획위원회]
사업 시행계획 공고	산업통상부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전문기관
선정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평가결과 확정	전문기관(결과보고) → 산업통상부 [사업별 심의위] (결과확정) → 전문기관 (결과통보) →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
신규과제 협약 체결	전문기관 ↔ 연구개발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단계 평가 ¹⁾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 ²⁾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진도 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상시점검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최종 평가	전문기관 [평가단]
연구개발비 정산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/위탁정산기관
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	연구개발기관 → 전문기관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1), 2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④ 자유공모의 경우
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
1) 개념평가 실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2), 3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⑤ 품목지정의 경우



*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,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,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

1) 개념평가 실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2), 3)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

[별표 3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 지원제의 대상 및 처리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(변경 전)

1. 제출서류 검토

-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.
-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2. 신청자격 검토

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.
 -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
 -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
②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.
-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,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.
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.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④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한다.

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한다.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.
-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.

⑥ 사업별 중소·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

[별표 3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 지원제의 대상 및 처리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(변경 후)

1. 제출서류 검토

-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.
-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2. 신청자격 검토

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.
 -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
 -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
②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.
-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, 추가적으로 산업통상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.
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.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④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한다.

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
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)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한다.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.
-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.

⑥ 사업별 중소·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

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의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